

지방계약법령 개정

행자부가 지난 3월 27일 행정자치부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국민연금·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 시행에 들어갔다. 행자부의 이같은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방계약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.

이로써 모든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서도 국민연금·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. 지방계약법령의 신·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.

□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<u>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</u></p> <p>제47조(준공대가의 지급)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.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천재·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<u>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</u></p> <p>제47조 (현행과 같음)</p>	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.</p> <p>< 신설 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 유의서</p> <p>제4조(입찰에 관한 서류)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(이하 “입찰에 관한 서류”라 한다)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.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3. 입찰참가신청서(소정서식) 4. 입찰서(소정서식) 5. 공사도급표준계약서(소정서식) 6.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7. 공사계약특수조건 8. 설계서(설계도면,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, 물량내역서 9. 시행령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10.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<p>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</p>	<p>제47조의2 (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)</p> <p>계약담당자는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시 예규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제4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 유의서</p>	<p>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지방자치단체 워가계산 및 예정가 작성요령</u></p> <p>(10) 보험료</p> <p>산업재해보험, 고용보험,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,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.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4-3-9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.</p> <p>5-2-4 간접공사비</p> <p>2. 간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며,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4-2-4의 제3호 및 4-3-6을 준용한다.</p> <p>(1) 간접노무비 (2) 산재보험료 (3) 고용보험료 (4)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(5) 안전관리비 (6) 환경보전비</p> <p>< 신 설 ></p> <p>(7)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</p>	<p><u>제4조의2(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속지 등)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공고 등에 예규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」제8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지방자치단체 워가계산 및 예정가 작성요령</u></p> <p>(10) 보험료</p> <p>----- -----</p> <p>--- 말하고, 동 보험료는 「건설사업기본법」제22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,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.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4-3-9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.</p> <p>(7) 국민건강보험료</p>	<p>입찰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 계약담당공무원의 조치 사항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숙지의 무 규정 마련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<u>지워진 경비로서 공사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</u> (8) 기타가접공사경비(수도광열비, 복리후생비, 소모품비, 여비·교통비·통신비, 세금과 공과금,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.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</p> <p>제38조 (일반관리비 및 이윤)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35조 내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.</p> <p>〈<u>신설</u>〉</p>	<p>(8) 국민연금보험료 (9)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사 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(10) 기타가접공사경비(수도광열비, 복리후생비, 소모품비, 여비·교통비·통신비, 세금과 공과금,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.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</p> <p>제8장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39조 (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)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(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)의 계상,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.</p> <p>제40조 (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)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「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」 제26조의2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.</p> <p>제41조 (입찰공고시 안내 등)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.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.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(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)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	<p>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한 규정 마련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예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일 이후부터 적용한다.</p>	<p>4.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</p> <p><u>제42조 (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)</u></p> <p>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(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) 2.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<p>② 계약담당자는 준공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당해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, 이를 확인 후 제41조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하여야 한다.</p> <p><u>제43조 (선금의 사용)</u>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선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 (시행일) 이 예규는 2007. 3.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 (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등에 관한 적용례) 제39조 내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.</p>	